

대회공정위원회 규정

제정 2025.02.28.

제1장 총칙

제1조(설치근거) 제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규정 제11조2 항에 따라 대회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및 적용) 이 규정은 회원단체와 등록된 동호인에게 적용하며, 이는 건전한 스포츠 문화의 정착과 공정한 경기를 통한 동호인 간의 상호 친목과 나아가 지역사회 생활체육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회원단체와 등록된 동호인의 수상에 관한 사항
- ② 회원단체와 등록된 동호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 ① 위원장 1인(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② 위원 6인(임원 2인, 리그별 추천 1인)
- ③ 간사 1인 (협회 업무지원 임직원)

제5조(임기 및 임무)

-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또한 위원회에 관한 회의록 작성, 청문 대상자 등에 관한 자료 일체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할 때는 해촉하여야 한다.

- ①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7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모든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가볍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부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표창

제10조(표창 대상) 표창은 대회 우수성적 달성, 야구 보급·육성 등 야구발전에 공헌한 단체 또는 동호인에게 수여한다.

제11조(절차)

- ① 모든 표창은 이사회 또는 회장의 요구로 의결에 부치며, 회원단체 장의 추천으로 심의한다.
- ②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확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표창 종류)

- ① 리그 단체분야 : 우승, 준우승, 최우수선수상, 감독상, 감투상
- ② 리그 타자분야 : 타율, 타점, 홈런
- ③ 리그 투수분야 : 평균자책점, 다승
- ④ 제주시리즈 : 우승, 준우승, 최우수선수상
- ⑤ 리그 골든글러브 : 투수, 포수,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 ⑥ 리그 운영분야 : 모범심판, 모범기록

제4장 징계

제13조(증거 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할 경우, 징계 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및 징계대상)

- ① 누구든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
1. 폭력·성폭력
 2. 승부조작, 편파판정
 3. 동호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4.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징계 종류) 감독, 선수, 운영(심판, 기록)위원에 대한 징계

- ① 감독, 선수에 대한 징계는 각호와 같으며, 출장정지는 퇴장당한 해당 경기를 포함한다.
1. 심판위원의 판정에 불복하여 퇴장당했을 경우 단, 퇴장 시 이의 없이 즉시 운동장을 떠날 때이며 퇴장당한 해당 경기를 포함한다.
 - 중징계 : 출장정지 (2경기~5경기)
 - 경징계 : 출장정지 (1경기)
 2. 상대 팀 선수 또는 심판위원을 구타하여 퇴장당했을 경우
 - 중징계 : 자격정지 (1년~3년) 또는 제명
 3. 욕설 또는 폭언을 하여 퇴장을 당했을 경우
 - 중징계 : 자격정지 (1년~3년)
 - 경징계 : 출장정지 (1경기~5경기)
 4. 폭행, 상대 팀 야유 등의 스포츠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로 퇴장당했을 경우
 - 중징계 : 자격정지 (1년~3년) 또는 제명
 - 경징계 : 출장정지 (1경기~5경기)
 5. 관중과 싸우거나 경기장 주변에서 소란을 피워 경기 진행을 방해하여 퇴장당했을 경우
 - 중징계 : 자격정지 (1년~3년) 또는 제명
 - 경징계 : 출장정지 (1경기~5경기)
 6. 판정불복, 빙볼, 기타 언행 및 행위(헬멧 던지기 등)로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히었을 경우
 - 중징계 : 자격정지 (1년~3년)
 - 경징계 : 출장정지 (1경기~5경기)
 7. 경기 중 동호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거나 관객들의 질서 문란 행위를 선동 또는 초래하였을 경우
 - 중징계 : 자격정지 (1년~3년) 또는 제명
 - 경징계 : 출장정지 (6경기~10경기)
 8. 협회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근거 없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경기 운영진 등에 대한 허위 낭설 유포로 인해 협회 또는 운영진의 명예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 중징계 : 자격정지 (1년~3년) 또는 제명

② 운영(심판, 기록)위원

※기상 조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기가 없는 주는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1. 경기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상당한 시간 지연이 되었을 경우

- 경징계 : 견책

2. 감독, 코치, 선수를 구타하여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 중징계 : 자격정지 (1년~3년) 또는 제명

3. 관중에게 무례한 언사로 운영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 중징계 : 자격정지 (1년~3년) 또는 제명

- 경징계 : 출장정지 (1주~5주)

4. 오심이 거듭되거나 경기 규칙을 잘못 적용한 경우

- 중징계 : 자격정지 (1~3년) 또는 제명

- 경징계 : 출장정지 (1주~5주)

5. 폭행으로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

- 중징계 : 자격정지 (1~3년) 또는 제명

6. 감독, 코치, 팀 관계자에게 폭언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였을 경우

- 중징계 : 자격정지 (1~3년)

- 경징계 : 출장정지 (1주~5주)

7. 심판위원 간 서로 다른 판정을 하거나 사인이 안 맞을 경우

- 중징계 : 출장정지 (1주~5주)

- 경징계 : 견책

③ 기타

1. 심판위원 또는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을 경우

- 중징계 : 자격정지 (1년~3년)

- 경징계 : 출장정지 (1경기~5경기)

2. 심판(기록)실을 방문하여 판정에 항의하거나 경기장 기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 중징계 : 자격정지 (1년~3년)

- 경징계 : 출장정지 (2경기~5경기)

3. 심판(기록)실을 방문하여 폭행하였을 경우

- 중징계 : 자격정지 (1년~3년) 또는 제명

④ 제1항부터 제3항 각호의 징계를 받은 선수, 운영위원, 회원단체 임원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회원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제16조(이의 신청)

① 제12조 표창 내규 및 제15조 징계 내규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 2일 이내 이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5일 이내 회의를 소집하여 이의 신청 및 징계·포상에 대하여 심의하며, 그 결과를 당사자 및 회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징계 등에 관한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규정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1. 일반기준

-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게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 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 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기록	가. 심판배정 등 불공정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미만
2. 감독, 선수	가. 부정선수 출전	
	해당선수	제명
	팀 운영진(대표, 감독)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선수 상호간 폭행	
	주동자	제명
3. 기타(참가자)	가. 경기장 집단폭행 가담행위	
	주동자	제명
	가담자	자격정지 1년 이상
4. 회원단체(팀)	가. 판정불복 경기 방해	출전정지 1년 미만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